

대한토지신탁(주) 귀중

##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통지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8년 5월 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당사 재산의 일부인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05-02 11:18/두산엔진(주)/관리)Treasurer팀/문재철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5월 3일 ~ 2018년 6월 4일

이의제출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두산엔진 주식회사 Treasurer팀

2018년 5월 3일

**두산엔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대표이사 김 동 철

